

##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 규칙 제3944호, 2018.2.7.)

###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비 고
방재분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업8급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 (사업 계속시)

### 3. 임용분야 주요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교육 및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방재	공업8급 (일 반 임기제)	<p>※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설비기사(전기 및 기계)를 취득한 사람</li> <li>2.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ol> <hr/> <p>▶ <b>경력인정 범위</b>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경력</p> <p>▶ <b>관련학위 해당학과</b> : 소방, 전기, 화공, 안전 등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p>

## 5. 보수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1,705천 원	36,882천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채정 가능

## 6.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세부내용 비공개)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7.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8. 4. 11.(수)	'18. 4. 24.(화) ~ 4. 26.(목)	서류전형	'18. 4. 27.(금)	10층 회의실	'18. 4. 30.(월)
		면접시험	'18. 5. 1.(화)	26층 회의실	'18. 5. 2.(수)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10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9. 제출 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응시수수료 : 8·9급(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시청 2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
  - ▶ 학위논문, 저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 10.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의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담당자 ☎ 051-888-1971)로 문의바랍니다.